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화성시 고시 제2022-728호(2022. 9. 21.)로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의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 처분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9.

케이이에스환경개발(주) 대표 송관호 (인)



1.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위 치 | 보 상 내 역 |
|--|------------------------|---|
| ◦종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명칭 : 화성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 | ◦토지,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2.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1) 보상시기 : 2024. 02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2)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3)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 (4)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손실보상협의요청
 - ①협의성립(계약체결시)→소유권이전→보상금 지급
 - ②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 (4)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시행자 : 케이이에스환경개발(주) 대표 송관호

4. 사업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22. 9. 21.) ~ 2024. 9. 20.

5.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1) 기 간 : 2023. 12. 05.(화) ~ 2023. 12. 26.(화) (15일간)
- 2) 장 소
 -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T:031-5189-2467)
 - > 보상사업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202호(코아루웰메이드시티)T:041)545-9091, F:041)545-9092

6. 열람 공고 : 토지 및 물건조서 등 열람 (따로 붙임)

7. 기타 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